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미래에셋자산운용㈜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6년 11월 03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 (매출) 총액]	투자신탁 수익증권. 단,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서면문서: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6.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투자신탁이 최초 기준가(상장시점의 기준지수)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손실이 발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손실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펀드는 분배를 지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게 됩니다. 이익초과분배여부는 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개별 수익자별로는 매입시점이 상이하므로 수익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익자별로 매입시점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분배가 지속될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①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 보다 작은 경우
②보유재산 매매를 통하여 기대했던 매매이익이 실현되지 않아 이익금이 분배할 금액보다 작거나 없는 경우
③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6년 10월 27일)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B8423)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 **주식가격변동위험, 추적오차 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1. 투자목적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투자전략

2. 투자전략

"코스닥 15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지정참가 회사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	0.19	0.001	-	0.22	22	46	70	123	274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10.01~ 26.09.30	24.10.01~ 26.09.30	23.10.01~ 26.09.30	21.10.01~ 26.09.30	
투자신탁	2015.11.11	3.00	5.94	3.05	-0.13	3.64
비교지수		3.58	6.37	3.32	-0.24	3.18
수익률 변동성		42.70	33.59	30.02	27.18	25.78

(주1) 비교지수 : 코스닥 150 지수 * 100%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단위: %)				운용 경력년수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하민정	1996	(책임) 매니저	12개	52,026억원	77.91	39.76	66.58	45.65	4년9개월
조민규	1998	(부책임) 매니저	15개	83,444억원	59.03	41.95	66.58	45.65	1년0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1.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개별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소규모 저유동성 종목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종목 중에는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낮은 종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저유동성 종목을 매매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적오차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시장수익률 추종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기초지수 수익률의 일정배율에 해당하는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 또는 기초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과 같은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기초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아래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기초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 제약요소 :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인덱스운용시 활용하는 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운용/판매 등 각종 보수, 위탁매매수수료, 지적재산권 수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운용관련 비용발생, 너무 작은 운용규모, 대량 또는 빈번한 설정/해지 등

매입방법	-개인투자자 :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 매수 -법인투자자 : 장내매수, 설정청구	환매방법	-개인투자자 :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 매도 -법인투자자 : 장내매도, 환매청구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산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한국거래소(www.krx.co.kr) 인터넷 홈페이지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u>**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번호 : 1577-1640 / 홈페이지 :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총액	제한을 두지 않음
효력발생일	2026년 11월 03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42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판매회사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QR코드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알림]

"코스닥 150 지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주)에게 라이센스 이용이 허가된 한국거래소의 서비스표입니다.

* 면책사항

1. 거래소는 KRX 지수 및 KRX 지수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완전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KRX 지수 및 KRX 지수에 포함된 정보에 오기, 누락 또는 단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2. 거래소는 이용자,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구매자와 KRX 지수 및 KRX 지수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KRX 지수의 완전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아니한다.
3. 거래소는 KRX 지수 및 KRX 지수에 포함된 정보의 상품성 및 특정목적에 있어서의 정합성 등을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아니한다.
4. 거래소는 KRX 지수 및 KRX 지수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의 손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5. 거래소는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당해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투자성 및 KRX 지수의 시장대표성(수익성)에 대한 어떠한 조언 및 보장도 하지 아니한다.
6. 거래소와 이용자간의 관계는 이용자신분 및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내용을 불문하고 거래소가 편집 및 산출하여 발표하는 KRX 지수에 대한 라이센스를 지수연계 금융상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국한된다.
7. 거래소는 이용자 및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KRX 지수의 편집 및 산출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지수연계 파생상품의 발행 및 판매의 시기선정 및 가격 또는 지수연계 파생상품의 결제방식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한다.
8. 거래소는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투자자들에 대하여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경영, 마케팅 및 매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9. 본 조에 의한 거래소의 면책사항은 본 계약의 종료에 불구하고 계속 효력을 가진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권리에 관한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B842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또는 "ETF"라고 함)(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 배율(음의 배율 포함)로 연동하거나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 및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 (판매) 기간	모집 개시(2015년 11월 6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판매) 장소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한국거래소(www.krx.co.kr) 및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법인투자자에 한하여 지정참가회사에서 모집 청구 (설정단위인 20,000좌 단위로 설정 청구 가능)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거래소 상장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1) 상장 증권시장 : 한국거래소
(2) 상장일 :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장예정
(3) 거래방법 및 거래가격 :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 거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에 따른 절차는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4) 상장요건
- 규모요건 :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주식 총수가 10 만주 이상이거나 수익증권의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 유동성 요건 :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이며,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회원 1사 이상과 업무규정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기초자산 요건 :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거래소 시장, 외국 거래소 시장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7-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및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거래소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 자산의 구성요건 : 자산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증권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함.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95이상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50이상
②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분의 95이상 편입할것
③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①또는 ②의 방법으로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 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합성상장지수펀드"라 함)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하 "액티브상장지수펀드"라 함)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합성상장지수펀드의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법 제12조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일 것. 이 경우 외국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거나 해당 국가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공신력있는 금융회사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복수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상장신청일 전 1년 이내의 등급으로서 최근의 등급을 말함)이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등급 이상일 것. 이 경우 보증인(거래상대방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인을 말함. 이하 같다)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함.
i)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경우 : 한국신용평가 AA-, 나이스신용평가정보 AA-, 한국기업평가 AA-
ii) 외국 신용평가회사의 경우 : S A-, Moody's A3, Fitch A-
iii) 그 밖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등급으로서 위의 i) 및 ii)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등급
▶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하 "순자본비율")이 같은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이 경우 보증인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함.
▶목표 수익률 달성 등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인정될 것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
②거래상대방에 대한 다음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출 것
▶거래상대방 위험의 평가기준, 평가주기 등 위험평가 방법
i) 위험평가액 산출 :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제5항에 따라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함)을 매일 산출할 것
ii) 장외파생상품 가치평가 : 위험평가액 산출을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가치평가는 법 제263조에 따른 복수의 채권평가회사(외국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거나 독립적인평가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신력 있는 회사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통할 것
▶거래상대방 위험의 적시 인식과 그에 따른 위험관리 방법
i) 위험평가액 한도 : 위험평가액이 해당 장외파생상품계약에서 정하는 기준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 이경우 위험평가액을 순자산총액(해당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함. 이하 같다)

의 100분의 5이하로 유지할 것
ii) 거래상대방 요건 등 상시 파악 : 위 ①에서 정한 거래상대방 요건의 충족 여부, 위험평가액 등을 상시 파악하고 지체없이 공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출 것
iii) 장외파생상품계약 : 국제스왑파생금융협회(ISDA)에서 정한 계약서의 표준을 준수할 것. 이 경우 기본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③장외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를 설정한 경우 다음의 담보관리체계를 갖출 것

▶유동성, 시가평가의 용이성 등 담보자산의 요건 : 담보자산은 다음 각 목의 속성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해당 담보자산이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속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i) 유동성이 높고 원화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즉시 바꿀수 있는 것
ii) 금융회사가 즉시 취득 가능할 것
iii)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매일 평가가 가능할 것
iv) 적절히 분산되어 있을 것
v)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과 상관관계가 낮을 것
vi) 담보권의 적시 행사가 가능할 것

▶담보자산별 담보인정비율 : 다음의 담보자산별 담보인정비율 기준을 준수할 것

i) 현금 : 100분의 100 이하
ii)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금융채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 "금융채"를 말함)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한 채무증권(상장된 것에 한함) : 100분의 95 이하
iii) 국내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주식관련사채권(상장된 것에 한함) : 100분의 80 이하
iv) 위의 ii) 및 iii) 외의 사채권(상장된 것에 한함) : 100분의 85 이하
v) 그 밖의 자산 : 위의 i) 내지 iv)의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비율 이하

▶담보유지비율 : 위험평가액이 위 ②에서 정한 기준 이내가 되도록 담보자산가치(위의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함)를 유지할 것.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계약이 자금 공여를 수반하는 때에는 담보 상계 전에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추정금액 대비 담보자산가치의 비율을 100분의 95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담보자산 관리방법

i) 담보의 정산・추가・해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 할 것. 이 경우 정산 등을 위한 담보자산의 가치평가는 예탁결제원(외국 예탁결제기구를 포함함. 아래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 내용 참조)을 통할 것
ii) 담보 제공 불이행시 조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할 것
iii) 거래상대방 부도 등의 발생시 담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내 또는 본국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 기준 및 절차를 갖출 것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 :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은 예탁결제원(외국 예탁결제기구를 포함함)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 거래소가 독립성 및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함)가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인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i) 위의 담보자산 관리방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출 것
ii) 담보자산의 가치평가 기준이 명확할 것
iii) 자본 규모, 업력, 이용 고객 수 등에 비추어 공신력이 인정될 것

④장외파생상품 외의 자산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자산이 유동성, 시가평가 용이성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2조제3항제1호(바목은 제외함)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9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116조의 상장폐지 기준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 수익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이하 "상관계수"라 함)가 0.9 미만(다만,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상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함.
(2)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 규정에 따라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 회원이 없는 경우

(4) 이 투자신탁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5)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거래상대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규정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규정에 따른 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업규정」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함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 부도, 은행거래정지, 자본금전액 잠식, 회생절차 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합병 등의 경우는 제외함)등의 경우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6)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7) 이 투자신탁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8)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수익증권의 상장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적용하게 되며,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의 상장요건 및 상장폐지요건 등은 이 투자설명서의 작성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요건의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B842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자	내 용
2015.11.11	최초설정(최초상장: 2015.11.12)
2016.07.02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5단계 체계->6단계 체계)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2016.07.30	판매/환매 기준시간 변경
2016.12.23	보수 인하(총보수0.30%->0.19%)
2023.03.17	투자대상자산(파생결합증권) 추가
2024.01.12	위험등급 변경[1등급(매우 높은 위험) → 2등급(높은 위험)]
2025.01.24	위험등급 변경[2등급(높은 위험)→1등급(매우 높은 위험)]
2026.06.26	운용역 변경(정의현 → 하민정(책임), 조민규(부책임))
2026.11.03	추적대상지수의 산업분류 기준 변경(GICS → KRICS)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 ☏ 1577-1640

나. 운용(지시) 업무등의 위탁 여부

해당사항 없음.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이력
하민정	1996	매니저	4년9개월	(21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하민정	12개	52,026억원	77.91	39.76	66.58	45.65	-	-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이력
조민규	1998	매니저	1년0개월	(23년~25년)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5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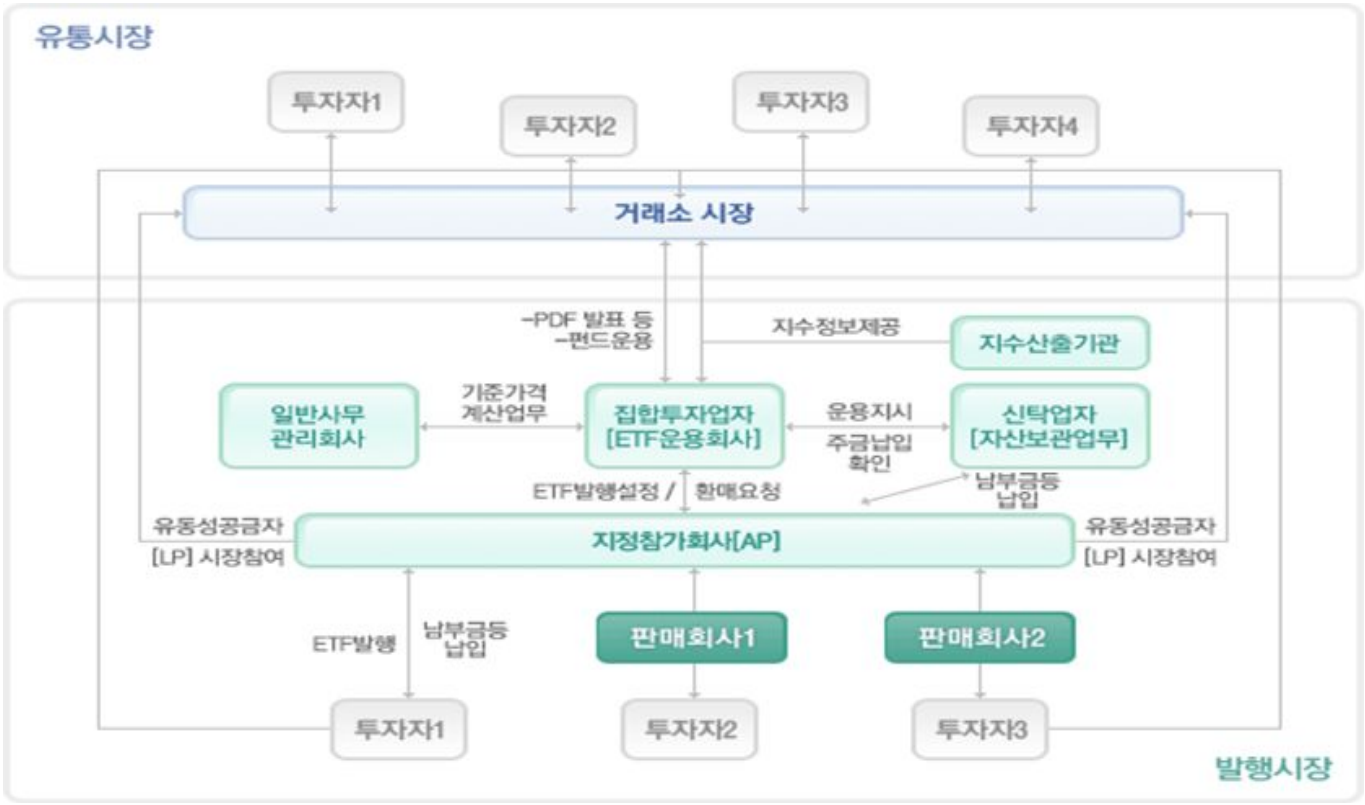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조민규	15개	83,444억원	59.03	41.95	66.58	45.65	-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 간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2015.09.01 ~ 2019.03.31	윤주영
2019.04.01 ~ 2020.03.25	윤주영(책임), 안현수(부책임)
2020.03.26 ~ 2021.03.16	오기훈(책임), 정의현(부책임)
2021.03.17 ~ 2026.06.25	정의현
2026.06.26 ~ 현재	하민정(책임), 조민규(부책임)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ETF는 기준가격에 따라 설정 해지가 이루어지는 "발행시장"과 발행된 ETF수익증권을 매매하는 "유통시장"이 함께 존재합니다. 발행시장은 일반적으로 법인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며, 설정해지를 위한 특정단위로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발행시장에서 ETF 설정을 원하는 경우 "AP"라고 불리우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ETF 설정에 필요한 현금등을 납입하고 그 대가로 ETF수익증권을 받게됩니다. 이렇게 수령한 ETF 수익증권은 유통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유통시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래소시장을 말합니다. 유통시장에서는 개별주식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도호가 / 매수호가의 경합으로 ETF의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때 LP라고 불리우는 유동성공급자에 의해 호가가 제공되어 거래의 편의성을 돕습니다.

※ ETF의 시장참가자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집합투자업자	ETF 운용주체 지수추적을 위한 펀드자산의 설계 및 구성종목 교체
지정참가회사(AP)	ETF 설정/해지 요청 업무 납부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업무
유동성공급자(LP)	AP역할 동시 수행 시장에서 호가제공의무 이행 등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역할 수행 (집합투자업자와 유동성공급계약 체결기관에 한함)
신탁업자	ETF 자산의 보관 및 관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업자를 대신하여 ETF 사무처리 업무 수행(NAV계산, ETF 설정/해지 정산금액의 산출)
투자자	ETF 매매(개인 및 법인투자자) ETF 설정 및 환매(법인투자자)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닥 15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

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1호의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하며,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지분증권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2	채권	4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4	파생결합증권	5와 합산하여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 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5	장내파생상품	4와 합산하여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	환매조건부매도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7	증권의 대여	보유증권 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8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③에 의한 증권의 차입
9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0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4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5~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ETF 매매 편의성 증대: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
(나)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에만 해당)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5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동일법인발행주식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7	추적대상지수 관련투자	- 지수 구성 종목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 납입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지수산출기관의 지수 편입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업일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동일종목 투자",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파생상품 투자"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닥 15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 기초지수 : 코스닥 150 지수
- 산출기관 : 한국거래소
- 지수개요 : 코스닥시장 대표성을 가지는 150종목으로 구성. 상장종목을 에너지화학, 소재, 산업재, 모빌리티, 정보기술, 금융 및 부동산, 소비재, 헬스케어, 미디어 및 콘텐츠의 9개 산업으로 분류하여 산업군별로 누적시가총액 60% 이내 & 거래대금 순위 80% 이내인 종목을 선정하고 150종목에 미달할 경우 잔여종목은 산업군에 상관없이 시가총액 순으로 선정, 150종목을 초과할 경우 시가총액 역순으로 제외
- 산출방식: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 정기변경 : 연 2회(6월, 12월 선물만기일 익일)
- 기준일 및 기준지수: 2010년 1월 4일 기준 1,000 Point

※ 이 투자신탁(ETF)에 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수관련정보: http://index.krx.co.kr (지수발표기관(한국거래소))
- PDF내역: http://www.tigeretf.com '투자정보'란 (TIGER ETF 전용 홈페이지)
- ETF관련 일반정보: http://www.tigeretf.com, http://etf.krx.co.kr (TIGER ETF 전용 홈페이지, 한국거래소 ETF전용 홈페이지)

※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이 투자신탁은 추적오차 최소화를 위해 기본적으로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해당 비율만큼 모두 포함하는 완전복제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주식 중 부도 가능성, 유동성 및 추

적오차 등을 감안하여 일부 종목을 제외하는 표본추출(Sampling)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제외된 종목을 대체하기 위하여 기초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을 편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지수의 구성종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기초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적오차를 줄이기 위해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증권의 대여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투자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포트폴리오 조정
이 투자신탁은 그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신탁재산 내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하여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비율을 조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유들입니다.
▶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정기적 또는 수시 교체시
▶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시가비중 변동시
▶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지수구성종목의 부도 발생시
▶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지수구성종목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
▶ 기타 이상과 같은 사유들에 준하는 중요한 사유 발생시

※ 비교지수 : 코스닥 150 지수 * 100%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교지수는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됩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기초지수 수익률과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관련비용의 최소화, 추적오차를 감안한 포트폴리오의 납입자산내역 작성 등의 다양한 보완방안을 실행할 것이지만, 최소한의 추적오차가 수시로 발생한다는 점과 때로는 추적오파의 정도가 상당수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기초지수의 상한가중치에 따른 종목당 최대편입비 초과분에 대한 최적화(Optimization) 과정에서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다양한 보수 또는 비용(위탁매매수수료, 상장수수료등) 등은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부(負)의 영향을 미쳐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현금배당은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정(正)의 영향을 미쳐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지수 구성종목의 정기 또는 특별변경 발생으로 인한 구성종목의 교체 또는 비율변경은 추적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 위험(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일반적으로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장외파생상품투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별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개인투자자 투자자금 회수곤란 위험	개인투자자는 ETF를 보유하게 되면 당해 ETF가 상장된 거래소(例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ETF가 상장된 거래소 ETF의 거래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께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 및 수량만큼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저유동성 종목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종목 중에는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낮은 종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저유동성 종목을 매매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적오차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ETF 상장폐지 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ETF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ETF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ETF를 상장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여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거래소에서의 매매를 통한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이익금 초과분배에 관한 사항	투자신탁이 최초 기준가(상장시점의 기준지수)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손실이 발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손실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펀드는 지속하여 분배를 지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게 됩니다. 이익초과분배여부는 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개별 수익자별로는 매입시점이 상이하므로 수익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익자별로

	매입시점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분배가 지속될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①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 보다 작은 경우 ②보유재산 매매를 통하여 기대했던 매매이익이 실현되지 않아 이익금이 분배할 금액보다 작거나 없는 경우 ③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시장수익률 추종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기초지수 수익률의 일정배율에 해당하는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 또는 기초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과 같은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적오차(Tracking Error) 위험	기초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아래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기초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 제약요소 : 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으로 인한 미체결, 인덱스운용시 활용하는 모델의 지수추적 괴리, 운용/판매 등 각종 보수, 위탁매매수수료, 지적재산권 수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운용관련 비용발생, 너무 작은 운용규모, 대량 또는 빈번한 설정/해지 등
지수산출방식의 대폭변경 또는 중단위험	이 집합투자기구의 기초(비교)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폐지 및 전부해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등(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 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자금 회수위험 (유동성위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자산이 매각이 어려운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변동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이해상충(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대주주 및 그 배우자,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같음)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은 위 거래 또는 위 거래로 인하여 얻거나 받은 이익, 커미션 또는 보수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공시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잠재적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제3의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이어야 합니다. 이상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상의 제한을 준수합니다.
소프트 달러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집합투자업자는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고객에게 직접적이고 구별되는 이익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장의 관행을 엄중하게 준수하면서, 회사와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 달러 수수료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으로 회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Research)과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정되며 출장, 숙박, 엔터테인먼트, 일반 사무용품 및 서비스, 사무실 및 기자재, 회원권, 임직원 보수 또는 직접 지불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 즉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위탁매매거래 수수료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
해외납세 의무자 관련위험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용실무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격괴리 위험	집합투자증권을 상장시킨 경우 거래가격은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좌당 기준가격(NAV)과는 통상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양이 적거나, 집합투자기구의 환매가 장기간 제한되어 있는 경우,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상의 유동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청구하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 시장 운영 관련 위험	ETF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으로, 시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오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TF시장 운영에는 ETF가 추종하는 지수의 산출 및 공시, 매일 시장에 발표되는 포트폴리오구성내역(PDF)의 공시, 거래 참고지표인 실시간순자산가치(iNAV)의 산출 및 공시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집합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지수산출기관, 정보제공기관 등)간의 데이터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 예기치 않은 실무적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정보 제공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거나 부정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판단의 정확성이 저해되거나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변동성이란 집합투자기구 수익률이 측정기간 내 평균수익률과 차이를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97.5% VaR)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변동성 값이 클수록 수익률 변동성이 크고, 위험수준이 높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97.5% VaR)은 **54.82%** 로서 위험등급 6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후 매결산 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등 급	1 (매우높은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높은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 낮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주1)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97.5% VaR값 54.82%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54.82%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증권시장을 통한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매를 통해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매수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매수대금 결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지정참가회사에서 설정을 통한 매입]

-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설정합니다.
- 설정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20,000좌 단위로 받습니다.
- 설정에 따른 수익증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받게 됩니다.
- 수익증권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하며,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은 현금에 의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1) 설정단위 (Creation Unit)

설정단위란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상장지수투자신탁을 설정 신청하거나, 수익자가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하는 단위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20,000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20,000좌 또는 그 정배수(40,000좌, 60,000좌 등)로만 설정을 청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월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하여 공시하고 공고할 것입니다.

<설정단위의 변경 예>

□ 이 투자신탁을 최초 설정할 당시의 추적대상지수가 10,000pt일 경우,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납입해야 할 자산의 평가금액은 2억(10,000pt × 승수 1 × 설정단위 20,000좌)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추적대상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0pt가 될 경우에는 투자자가 납입하여야 할 자산의 평가금액이 4억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정단위 평가금액의 상승은 이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를 방해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익증권의 수를 10,000좌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정산금액 (Balancing Amount)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기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산금액 산출 : 설정청구일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청구일 종가 기준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 재산의 운용이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 정산일 : 투자자는 당해 정산금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

► 정산금액 발생 이유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납입자산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설정청구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정산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정산금액 최소화 방안

위와 같은 정산금액의 발생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동 정산금액 발생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 보유 주식에서 발생할 현금배당 등을 그 전일자 포트폴리오납입자산 작성시 반영
- 익일의 발생할 포트폴리오 재구성(re-balancing) 내역을 그 전일자의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작성시 반영 등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동 정산 금액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 투자신탁의 설정에 관한 사항

①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설정청구의 효력 등
- 이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16시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16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설정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기 ①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입(납입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납부자산구성내역과 100분의 95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상기 ②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합니다)에 갈음하여 금전을 납입(이하 '대납현금'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지정참가회사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대납현금의 산출 :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행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2. 대납현금의 정산 : 대납현금의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⑤ 투자자가 상기 ②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하는 등 변경(이하 '납부금등의 매매'라 합니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⑥ 지정참가회사가 상기 ⑤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합니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을 매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주의사항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납부금등을 매매할 것입니다. 그러나 납부금등의 매매결과가 항상 완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유가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등을 말합니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 상기 ⑤ 및 ⑥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합니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⑧ 상기 ⑤ 내지 ⑦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유가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⑨ 지정참가회사가 상기 ⑧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상기 ②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상기 ⑥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투자자의 납부금등을 매매한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 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⑩ 상기 ⑤ 내지 ⑦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 상기 ① 내지 ⑩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⑫ 상기 ① 내지 ⑪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설정청구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주식의 교체 필요시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교체를 위하여 수탁회사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3영업일간 설정청구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채용 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 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에 수익증권 설정 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이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설정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⑬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의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4) 설정절차

[일자별 설정절차 요약표]

	투자자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전자등록기관	신탁업자
T-1일			포트폴리오 납입자산통보(거래소 등)		
T일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청구	설정내역 확인 및 승인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T+1일		인수도명세서확정			
T+2일	정산금액의 정산 및 수익증권 수령	신탁업자에게 납부금등 이체	수익증권 발행(전자등록기관 전자등록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확정된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납부금 등의 납입확인

나. 환매

[증권시장을 통한 매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장중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매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지정참가회사에서 투자신탁 환매 청구]

-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해지를 합니다.
- 해지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20,000좌 단위로 받습니다.
- 해지에 따른 환매대금은 그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받게 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환매에 관한 사항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그 밖에 이 투자신탁이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합니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등
-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16시까지로 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을 청구하는 경우, 그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16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기 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는 상기 ①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상기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⑤ 상기 ② 내지 ④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상기 ② 내지 ⑤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⑦ 상기 ② 내지 ⑥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합니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⑧ 상기 ⑦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⑨ 상기 ⑦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⑩ 상기 ⑦ 내지 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⑪ 상기 ① 내지 ⑩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라 합니다)로 인하여 상기 ⑦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상기 ⑦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⑫ 상기 ⑪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⑬ 상기 ① 내지 ⑫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 필요시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수탁회사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함)로부터 3영업일간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채용 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에 수익증권 환매 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⑭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2) 환매절차

[일자별 환매절차 요약표]

	투자자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전자등록기관	신탁업자
T-1일			포트폴리오 납입자산통보		
T일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	환매내역 확인 및 승인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T+1일		인수도명세서확정			
T+2일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 수령	투자자계좌에서 수익증권인출 및 자산입고	투자신탁 일부해지	실행된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지정참가회사로 자산이체 및 이체내역 확인

(3) 설정・환매시 자산의 이체 방법

가.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설정 또는 환매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 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법으로 당해 자산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입・출고에 의한 설정・해지는 불가합니다.
나.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환매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환매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전자등록기관이 운영하는 전자등록기관 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투자신탁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상기의 환매 관련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5)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시 비용 미발생
X	X	O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그 공고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한국거래소(www.krx.co.kr) 인터넷홈페이지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다만, 외화표시 상장채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날에 당해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외국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⑧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평가방법 주요내용: 장외파생상품 평가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평가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적용하며 채권평가회사는 각 사의 독립적인 평가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을 산출
⑨기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집합투자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구성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
업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기타 관련 법규 또는 집합투자규약 등에 의해 위임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 판매수수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환매수수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전환수수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용(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합성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투자신탁	0.149	0.001	0.02	0.02	0.19	0.03	0.22	-	0.22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다만, 최초 보수계산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의 보수계산기간은 그 익일부터 매 3개월간을 의미함.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기간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설정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입니다. 한편 기타비용은 대체로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 거래비용	83,642
금융비용	-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수익증권 종류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투자신탁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22	46	70	123	27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2	46	70	123	274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투자수익률은 보수 차감전 연간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지수사용료 등)
9.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은 제외]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합니다.
-지급기준일 : 매 1, 4, 7, 10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
-대상 수익자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합니다.
③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이란?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현금에서 발생하는 배당 등의 배당수익을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으로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시기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운용목적(추적대상지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 실현)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예외의 경우
투자신탁의 보유현금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유현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금 초과분배에 관한 사항
투자신탁이 최초 기준가(상장시점의 기준지수)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손실이 발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손실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펀드는 분배를 지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익 금을 초과하여 분배하게 됩니다. 이익초과분배여부는 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개별 수익자별 로는 매입시점이 상이하므로 수익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익자별 로 매입시점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분배가 지속될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 할 수 있습니다.
①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②보유재산 매매를 통하여 기대했던 매매이익이 실현되지 않아 이익금이 분배할 금액보다 작거나 없는 경우
③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 된 경우

(3) 상환금등의 지급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현금화하여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기한 : 신탁계약해지 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
- 지급 순자산가치 : 상환금을 지급하는 직전일의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
- 자산의 형태 : 당해 잔존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
- 대상 수익자 : 신탁계약해지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 상환금 지급처 : 수익자의 위탁매매계좌(신탁계약해지 기준일에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보유 하고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가 개설되어 있는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또는 증권회사에서 상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과세

아래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 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07월 0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아래의 기준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투자자별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금분배시: ETF 결산시점에 분배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을 한도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분배금액은 분배부 과표기준가격에서 분배락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현금분배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과표증분은 분배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② 매도시: ETF 매도, 환매, 해지 및 해산 시점(이하, '매도시점')에는 보유기간동안의 과표증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며 과세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과표증분과 매매차익 계산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매매차익은 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유보금액은 분배금액에서 결산시점의 과표증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나의 계좌 내에서 동일한 ETF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수량 가중 평균 가격을 산출하여 매수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③ 매수 과표기준가격 적용 기준: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전에 매수하여 시행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를 매수 과표기준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매수시 과표기준가가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보다 높은 경우 매수시 과표기준가를 적용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기준가격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를 제외한 아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감사의견
10기(24.01.01 ~ 24.12.31)	적정
11기(25.01.01 ~ 25.12.31)	적정
12기(26.01.01 ~ 26.06.30)(반기)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항목	12기(26.06.30)	11기(25.12.31)	10기(24.12.31)
운용자산	1,446,543	335,633	108,642
증권	1,443,454	331,578	105,625
파생상품	-	-	-
부동산/실물자산	-	-	-
현금 및 예치금	1,188	4,054	3,016
기타운용자산	1,900	-	-
기타자산	251	737	359
자산총계	1,446,794	336,371	109,001
운용부채	-	-	-
기타부채	1,194	175	141
부채총계	1,194	175	141
원본	907,325	225,510	99,123
수익조정금	594,738	-	-
이익잉여금	110,685	110,685	9,736
자본총계	1,449,817	336,195	108,860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12기(26.01.01 ~ 26.06.30)	11기(25.01.01 ~ 25.12.31)	10기(24.01.01 ~ 24.12.31)
운용수익	-160,996	50,117	-20,694
이자수익	112	60	76
배당수익	2,209	853	275
매매/평가차익(손)	-163,689	49,146	-21,087
기타수익	371	57	41
운용비용	1,935	388	238
관련회사보수	1,601	315	192
매매수수료	28	6	5
기타비용	306	66	40
당기순이익	-162,931	49,729	-20,933
매매회전율	85	123	14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12기 370백만원, 11기 51백만원, 10기 27백만원발생)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12기 0백만원, 11기 0백만원, 10기 0백만원발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65892.91	65.88	0.1	44648.64	44.63	0.1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0	0	0	0	0	0
부동산	0	0	0	0	0	0
장내파생상품	25958.43	2.59	0.01	30111.18	3.01	0.01
장외파생상품	0	0	0	0	0	0
합계	91851.34	68.47		74759.82	47.64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백만원, 주)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1031997	32921.44	1419772	32972.47	165040.54	19.9784	14.06

*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외)을 의미하며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항목	12기(26.06.30)	11기(25.12.31)	10기(24.12.31)
운용자산	1,446,543	335,633	108,642
증권	1,443,454	331,578	105,625
주식	1,443,454	331,578	105,625
ETF	-	-	-
채권	-	-	-
매입어음	-	-	-
수익증권	-	-	-
외화유가증권	-	-	-
기타유가증권	-	-	-
파생상품	-	-	-
주가지수매입옵션	-	-	-
ELS	-	-	-
ELW	-	-	-
DLS	-	-	-
부동산/실물자산	-	-	-
부동산	-	-	-
현금 및 예치금	1,188	4,054	3,016
예금	1,148	4,005	3,016
외화예금	-	-	-
CD	-	-	-
정기예금	-	-	-
위탁증거금	40	49	-
청약증거금	-	-	-
기타운용자산	1,900	-	-
콜론	1,900	-	-

환매조건부채권	-	-	-
기타자산	251	737	359
미수이자	1	-	1
미수배당금	177	722	318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	-	-
선물정산미수입금	-	-	37
선납(선급)원천세	-	-	-
기타	72	13	2
자산총계	1,446,794	336,371	109,001
운용부채	-	-	-
매도유가증권	-	-	-
미지급주식	-	-	-
미지급채권	-	-	-
미지급ETF	-	-	-
주가지수매도옵션	-	-	-
기타부채	1,194	175	141
미지급보수	875	110	48
미지급해지금	-	-	-
미지급이익분배금	-	-	-
미지급원천세	-	-	-
기타부채	318	65	92
부채총계	1,194	175	141
원본	907,325	225,510	99,123
수익조정금	594,738	-	-
이익잉여금	110,685	110,685	9,736
당기순이익	-162,931	-	-
감자차익/차손	-	-	-
자본총계	1,449,817	336,195	108,860

다.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12기(26.01.01 ~ 26.06.30)	11기(25.01.01 ~ 25.12.31)	10기(24.01.01 ~ 24.12.31)
운용수익	-160,996	50,117	-20,694
투자수익	2,693	971	393
이자수익	112	60	76
배당수익	2,209	853	275
기타수익	371	57	41
매매이익	351,140	70,152	25,618
주식매매이익	330,428	65,624	20,445
파생상품매매이익	20,712	4,527	5,173
채권매매이익	-	-	-
외환거래이익	-	-	-
유동자산매매이익	-	-	-
ETF매매이익	-	-	-
수익증권매매이익	-	-	-
기타매매이익	-	-	-
매매손실	514,830	21,005	46,706
주식매매손실	499,101	17,317	40,983
파생상품매매손실	15,728	3,687	5,723
채권매매손실	-	-	-
외환거래손실	-	-	-
유동자산매매손실	-	-	-
ETF매매손실	-	-	-
수익증권매매손실	-	-	-
기타매매손실	-	-	-
운용비용	1,935	388	238
위탁보수비	1,255	247	150
판매보수비	8	1	1
수탁보수비	168	33	20
사무관리보수비	168	33	20
자문보수비	-	-	-
매매수수료	28	6	5
기타비용	306	66	40
당기순이익	-162,931	49,729	-20,933
비용	516,766	21,394	46,945
수익	353,834	71,123	26,011
천좌당 순이익(원)	-1,864,313	4,120,450	-2,803,07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단위:백만)

투자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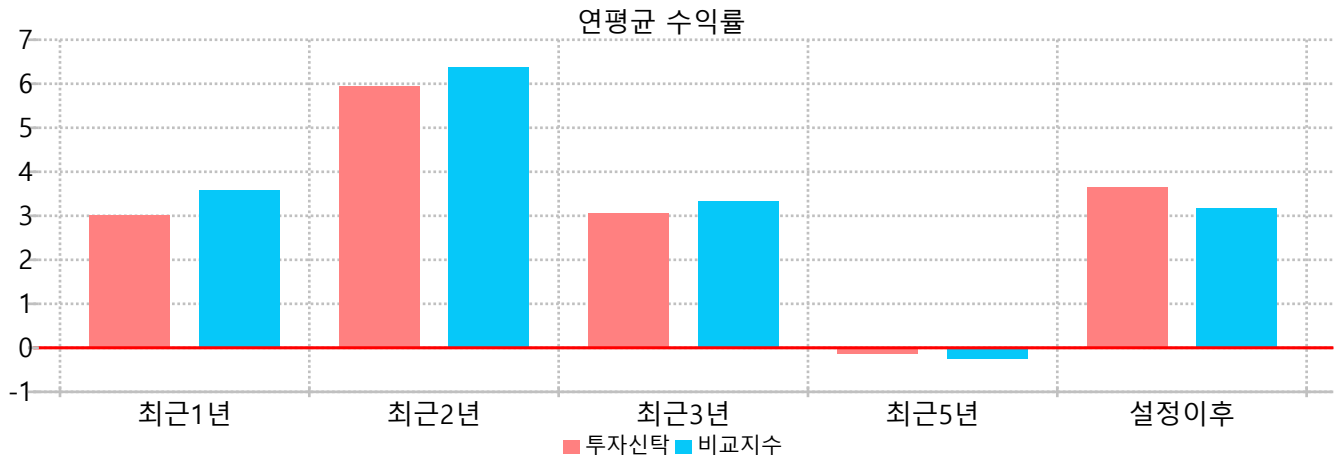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생)		환매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 분수)	금액	금액
'24.01.01~' 24.12.31	6	95,291	11	150,832	8	116,329	9	129,793	-
'25.01.01~' 25.12.31	9	108,860	24	349,117	12	171,511	21	286,466	-
'26.01.01~' 26.06.30	21	336,195	126	2,487,251	61	1,214,915	85	1,608,531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단위:%)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이후
(기간)	25.10.01~ 26.09.30	24.10.01~ 26.09.30	23.10.01~ 26.09.30	21.10.01~ 26.09.30	설정일~ 26.09.30
투자신탁	3.00	5.94	3.05	-0.13	3.64
비교지수	3.58	6.37	3.32	-0.24	3.18
수익률 변동성	42.70	33.59	30.02	27.18	2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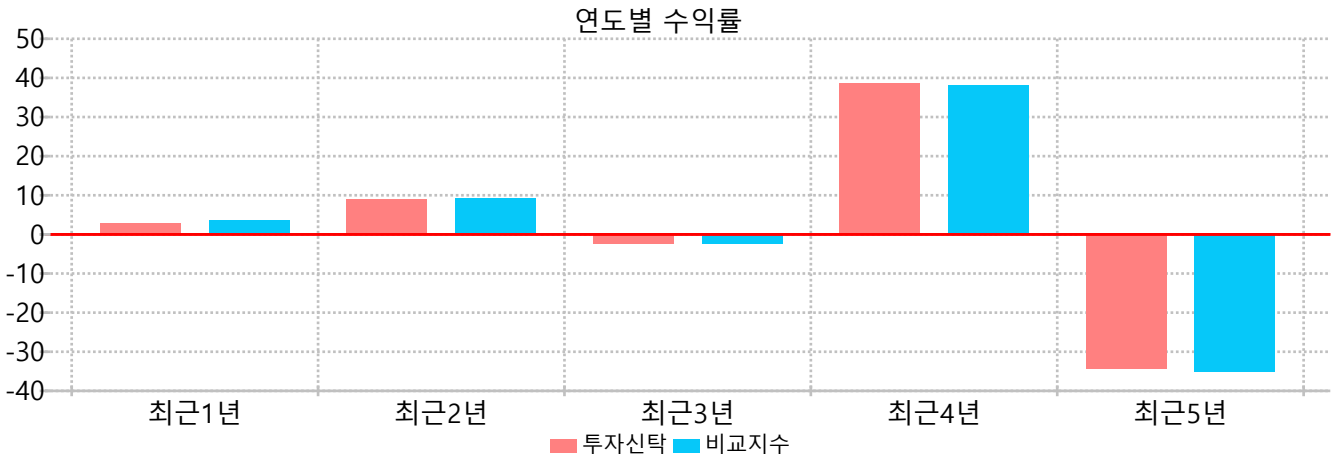


*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단위:%)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기간)	25.10.01~ 26.09.30	24.10.01~ 25.09.30	23.10.01~ 24.09.30	22.10.01~ 23.09.30	21.10.01~ 22.09.30

투자신탁	3.00	8.96	-2.48	38.57	-34.48
비교지수	3.58	9.22	-2.52	38.18	-3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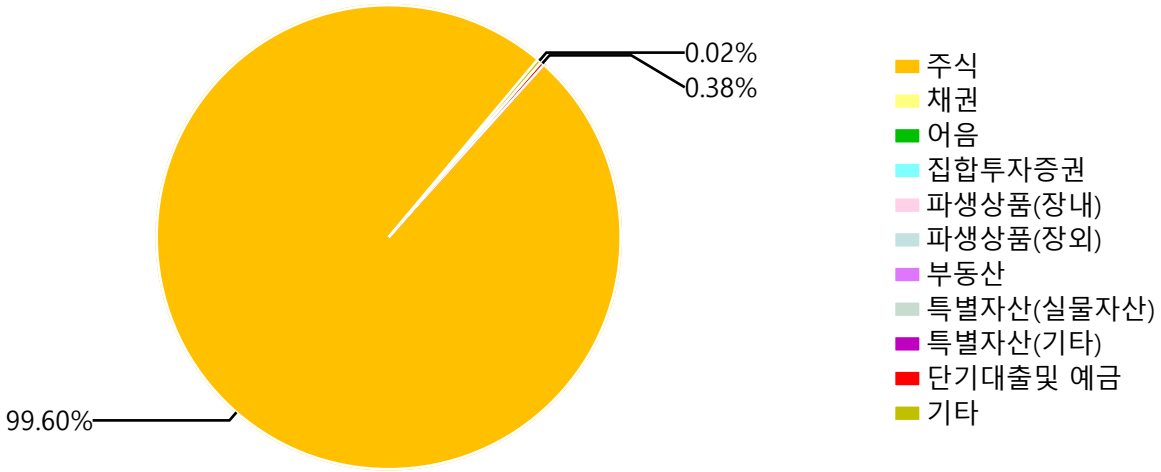
* 연평균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 비교지수는 코스닥 150 지수 * 100%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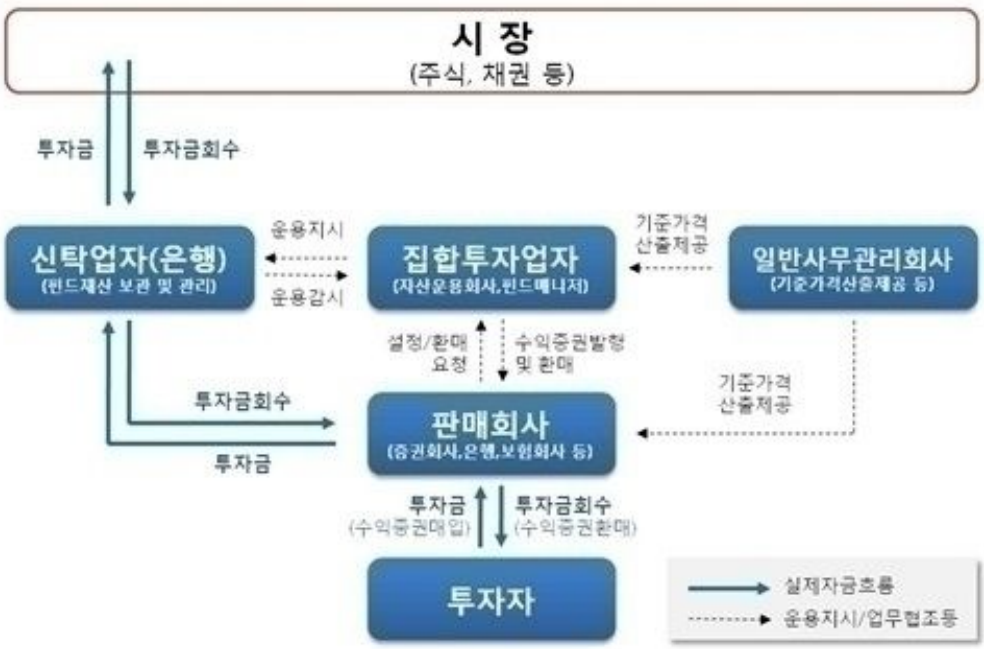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 %, 백만, 2026.09.30 기준)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한국)	1,437,238	-	-	-	-	-	-	-	-	5,511	218	1,442,967
	99.6	-	-	-	-	-	-	-	-	0.38	0.02	100
합계	1,437,238	-	-	-	-	-	-	-	-	5,511	218	1,442,967
	99.6	-	-	-	-	-	-	-	-	0.38	0.02	100

자산구성현황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등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등은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등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 ☏ 1577-1640
홈 페 이 지 주 소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자 본 총 계	4조 5,944억원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 요 주 주 현 황	박 현 주 外
회 사 연 혁	1997년 07월 미래에셋 설립 2006년 11월 미래에셋투신운용주식회사 합병 2012년 3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2024년 3월 멀티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해지 /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운용지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2025.12.31	2024.12.31	항 목	2025.01.01 ~ 2025.12.31	2024.01.01 ~ 2024.12.3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32,510	92,708	영업수익	608,922	423,329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166,491	123,681	영업비용	328,796	282,107
유가증권	5,275,015	4,647,770	영업이익	280,126	141,22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61,379	66,887	지분법손익	591,743	385,105
기타자산	6,545	6,560	영업외수익	1,365	10,250
자산총계	5,741,941	4,937,606	영업외비용	2,744	2,916
예수부채	41,650	20,201	법인세차감전이익	870,489	533,661
차입부채 및 발행사채	529,380	619,314	당기순이익	713,047	450,732
기타부채	576,498	423,101			
부채총합	1,147,528	1,062,616			
자본금	67,861	67,861			
자본잉여금	384,177	246,633			
기타포탈손익누계	-25,339	80,811			
이익잉여금	4,167,714	3,479,685			
자본총계	4,594,413	3,874,990			

라. 운용자산 규모 (2026.09.30 **현재 / 단위:십억좌 / 협회 발표기준)**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단기금융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자산	혼합자산	PEF	투자일임기타	총계
	주식	혼합주식	혼합채권	채권	소계									
수탁고	147,594	6,412	6,793	46,851	207,650	8,504	25,485	11,518	62,638	12,592	13,887	817	-	343,09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 02-2073-7114
홈페이지	www.kbstar.com
연혁	1963년 2월 설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소및 연락처	073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I, 44층 ☏ 02-769-7800
홈페이지	korfp.com
연혁	1998년 11월 ㈜한국채권연구원 설립 2000년 8월 금융감독원 일반사무관리업 등록 2022년 6월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 · 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홈페이지	www.bond.co.kr

회사명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홈페이지	www.fnpricing.com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88 ☏ 02-2251-1300
홈페이지	www.koreaap.com

회사명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02-398-3900
홈페이지	www.nicepni.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권리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자총회 등

(1) 집합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 총회의 소집 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ㄱ)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 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 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 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등 운용실적에 관해서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 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이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포함)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기 간	매매처명	거래구분	자산구분	거래금액
'24.01.01~'24.12.31	미래에셋증권	위탁거래	주식	60,492,371,771
'25.01.01~'25.12.31	미래에셋증권	위탁거래	주식	112,237,163,717
'26.01.01~'26.06.30	미래에셋증권	위탁거래	주식	661,736,890,394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증권의 거래>	① 선정 시 고려사항 - 매매주문이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 일 것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유리할 것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 선정방법 등 - 매매업무 담당부서, 운용부서 및 리서치부서의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실행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함.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증권의 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알림]
"코스닥 150 지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주)에게 라이센스 이용이 허가된 한국거래소의 서비스표입니다.

* 면책사항

1. 거래소는 KRX 지수 및 KRX 지수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완전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KRX 지수 및 KRX 지수에 포함된 정보에 오기, 누락 또는 단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2. 거래소는 이용자,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구매자와 KRX 지수 및 KRX 지수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KRX 지수의 완전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아니한다.
3. 거래소는 KRX 지수 및 KRX 지수에 포함된 정보의 상품성 및 특정목적에 있어서의 정합성 등을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아니한다.
4. 거래소는 KRX 지수 및 KRX 지수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의 손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5. 거래소는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당해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투자성 및 KRX 지수의 시장대표성(수익성)에 대한 어떠한 조언 및 보장도 하지 아니한다.
6. 거래소와 이용자간의 관계는 이용자신분 및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내용을 불문하고 거래소가 편집 및 산출하여 발표하는 KRX 지수에 대한 라이센스를 지수연계 금융상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국한된다.
7. 거래소는 이용자 및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KRX 지수의 편집 및 산출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지수연계 파생상품의 발행 및 판매의 시기선정 및 가격 또는 지수연계 파생상품의 결제방식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한다.
8. 거래소는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투자자들에 대하여 지수연계 금융상품의 경영, 마케팅 및 매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9. 본 조에 의한 거래소의 면책사항은 본 계약의 종료에 불구하고 계속 효력을 가진다.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신탁업자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어,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까지의 총 발행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통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거래규모를 수반하는 거래로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효과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투자위험을 초래합니다.
보수	펀드의 운용, 판매 및 관리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수취할 수 있는 보수를 말합니다.
수익자총회 (=투자자총회, 집합투자자총회)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펀드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또는 환매 시,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특정기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